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4

(2016. 2. 1)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월 15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월 21일(목)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정함
- 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7조제3항)
  -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 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마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2016. 3. 16)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의 관라·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보다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우리 구 조례에서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례 제3조의2(존속기한) 중 “5년”을 “2021년 3월 16일”로 정함은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도 적합하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